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교육훈련사업’ 추가〉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0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216806)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범위에 ‘교육훈련사업’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 2 |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2216806)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2.
3. 회 부 일 : 2026. 2.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범위에 ‘교육훈련사업’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1. (생략)<br><u>&lt;신설&gt;</u><br><br>2. ~ 9. (생략)<br>② (생략) | 제10조(사업) ① -----<br>-----<br>-----.<br>1. (현행과 같음)<br><u>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u><br>2. ~ 9.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br><br><div style="text-align: center;">부칙</div><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sup>1)</sup>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제10조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음(제10조제2항).<sup>2)</sup>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2008년 항공교육원을 설

---

###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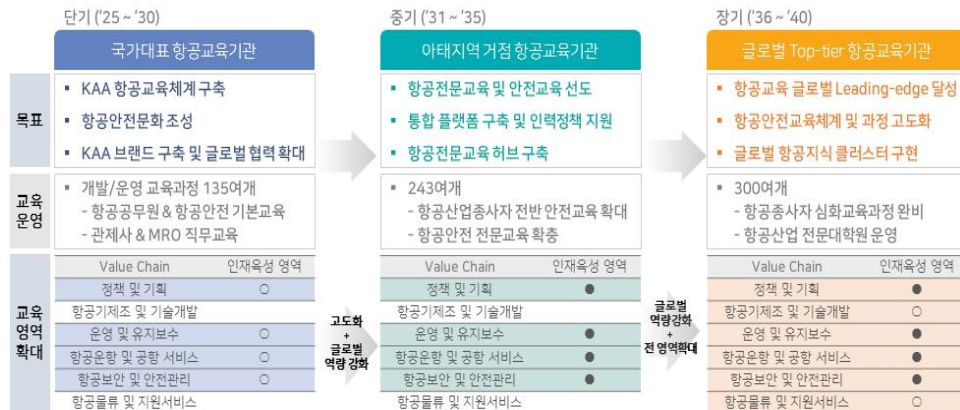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7.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8.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9.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립하여 연평균 5만 7천명의 국내·외 항공종사자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산업 전반 종합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항공아카데미(KAA)<sup>3)</sup>를 설립·운영 중임.<sup>4)</sup>

### 【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추진 계획 】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sup>5)</sup>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현행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정사업화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전문 교육훈련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3)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추진 경과(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1차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2017년) : 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추진(~2023년)  
 - 제2차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2023년) : 국제수준 한국항공아카데미 설립 운영으로 교육훈련 내실화  
 - 국토부~공사 한국항공아카데미(KAA) 지정·운영 협약 체결(2024년)

4)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 중임.

5)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항 운영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국공항공사법」에도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명시하고 있음.<sup>6)</sup>

다만,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공익성이 높은 사업인 점, 「한국공항공사법」에서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sup>7)</sup>을 받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범위에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을 추가할 경우, 「한국공항공사법」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현행법의 지도·감독 규정<sup>8)</sup>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6)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7)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나. 관계기관 의견

### 1) 국토교통부 의견

교육훈련사업 등의 사업 근거 신설을 위해서는 타 기관과 같이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과 부합해야 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건설·운영 및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국공항공사와 설립목적에 차이가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공항운영과 연관된 교육훈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인천국제공항공사 의견

공사에서는 2008년 항공교육원을 설립하여 현재 국내항공전문교육기관 중 최대 규모인 연평균 5만 7천명의 국내·외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중추공항으로서 항공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선도적 교육훈련 목표수립, 이행의 법적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

-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